

성균관대학교
자연과학캠퍼스
총학생회
선거운동규칙

[시행 2024.11.1.] [2024.10.31. 일부개정]

제1장 선전세칙.....	2
제2장 통신세칙.....	10
제3장 재정세칙.....	11
제4장 사례세칙.....	12
부칙.....	14

제1장 선전세칙

제1조 (선거운동의 원칙)

- ① 본 원칙은 모든 세칙보다 우선 적용된다.
- ② 선전(선거운동)은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는 선거운동본부(이하 ‘선본’)의 정책적 내용을 홍보하는 장으로써 상대방 선본에 대한 비방 및 비난을 금지한다.
- ③ 모든 선전물은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규칙에 준하는 것만이 허용되며 이외의 상황이 발생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중선관위’)의 결정에 의거 활용여부를 결정한다.
- ④ 선거운동규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에 의거 하여 징계를 내리고, 선본은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위반한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.
- ⑤ 돈이 최대한 적게 드는 선전물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과열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선전물 제작을 피한다.
- ⑦ 선전물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‘먼셀표색계(10색상환)’을 기본으로 하며, 무채색은 도수로 세지 않는 것으로 한다. 10색상환에서 벗어나는 색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, 색상의 RGB 또는 CMYK 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선전물 색상 도수 제한은 2도를 기본으로 한다. 다수의 선본의 등록으로 색상이 겹치거나 너무 가까운 색상과 채도가 선정될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조정해야 하며, 조정이 불가능해 질 경우, 색상 도수 제한을 1도를 원칙으로 하고 각 선본색의 색상의 간격을 2도 이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.
- ⑨ ‘도수 제한은 2도를 기본으로 한다’는 선본에서 등록 시에 제출한 선본색 2색과 무채색을 제외한 색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.
- ⑩ 선정된 색상의 변화는 허용하지 않는다. 단, 인준을 원하는 선전물에 대하여,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색상의 미미한 변화는 중선관위 해당시간 인준위원의 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⑪ 선전물을 인쇄로 제작할 경우, 미리 CMYK 모드로 작업하여 실제 출력물과 시안 파일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. 그 격차가 눈에 띄게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중선관위는 선전물의 인준 및 배포를 즉시 중지할 수 있으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.
- ⑫ 제11항 이외의 선전물에 대하여, 상식적으로 납득가능한 색상의 미미한 변화는 중선관위 해당시간 인준위원의 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⑬ 선전물에 쓰이는 후보자의 사진은 도수규정의 예외로 한다. 단, 선전물이 흑백으로 제한될 경우는 후보자의 사진도 흑백이어야 한다. 여기서 흑백은 ‘떡1도’를 의미한다.
- ⑭ 제7항 및 제8항 및 제9항 및 제10항 및 제11항 및 제12항 및 제13항을 도수규정으로 명시한다.
- ⑮ 평면 선전물을 원칙으로 하되 평면에서 1cm 높이까지는 인정한다. 그 이상의 선전물은 입체선전물로 간주한다.
- ⑯ 모든 선전물은 사전에 중선관위의 인준을 받은 뒤 사용한다.
- ⑰ 정기 인준시간은 평일 09:00 - 09:30, 13:00 - 13:30, 17:30 - 18:00으로 정한다. 이외의 시간에는 인준이 불가능하다.
- ⑱ 인준 대기 중인 선전물에 대하여 중선관위 회의를 통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, 회의가

종료되어 인준이 허락된 직후 그 선전물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- ⑲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전물을 부착, 배포, 사용하는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⑳ 부착 선전물의 부착장소 등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중선관위원과 선본장이 포함된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을 갖고 선거운동규칙을 점검하며 결정한다.
- ㉑ 든 선거운동은 교내로 제한하며, 교내는 '북문~지관 길', '지관', '쪽문 입구 보도블럭(인도)', '삼성서울병원(성균관대학교 교육병원) 일대'를 포함한다.

제2조 (선본복)

- ① 선본복의 도수는 1도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가격은 1벌 당 35,000원 이하로 규정하며, 인준 시 이에 대한 영수증(청구서)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선본복의 제작은 1종만이 허용된다.
- ④ 모자, 목걸이를 포함한 모든 부속물품은 각 선본복에서 분리되지 않는 경우 기타 신체부착물이 아닌 선본복으로 인정한다. 단, 원래의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선본복과 연결하는 것은 금지한다.
- ⑤ 선본복은 매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- ⑥ 선본복은 선본원만 착용할 수 있다.
- ⑦ 교내는 '북문~지관 길', '지관', '쪽문 입구 보도블럭(인도)', '삼성생명일원역사(성균관대학교 교육병원) 일대'를 포함하며, 선본복은 교내를 제외한 장소에서 착용이 불가능하다.
- ⑧ 선본복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- ⑨ 단, 제2항, 제6항, 제7항을 어겼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3조 (기타 소품)

- ① 기타 소품은 1종으로 규정하고, 크기는 A4 이하여야 한다.
- ② 그 소품이 패찰일 경우, 인쇄를 인정한다. 단, 선본복에 연결하여야 한다.
- ③ 소품은 사전에 중선관위의 인준을 받은 뒤 사용한다.
- ④ 소품은 입체를 허용하며, 그 재질에 제한이 없다.
- ⑤ 소품은 소음을 유발해서는 아니 되며, 주위에 방해가 최대한 적은 것이어야 한다.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직권으로 소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. 이후에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- ⑥ 기타 소품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4조 (부착선전물)

- ① 부착선전물(이하 부착물)은 출사표, 자보, 선전물, 포스터, 현수막, 카드글씨 등 선본이 제작한 부착가능한 선전물을 총칭한다.
- ② 부착장소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정하며, 그 장소는 지정된 게시판 안과 A보드 안으로 제한한다. '안'이라 함은, 부착물이 부착장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. 단, 현수막, 걸개는 예외로 한다.

- ③ 부착매수는 정해진 매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.
- ④ 기본적으로 부착물은 원칙에 명시된 도수규정에 따라 제작한다.
- ⑤ 도수규정의 예외경우는 각 부착물 세칙에 명시해놓는다.
- ⑥ 모든 부착물에 대하여 인쇄가 가능하다. 인쇄로 제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
- ⑦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비난이 실린 경우 중선관위원회는 임의적으로 부착물에 손을 댈 수 있으며 중선관위는 2시간 내에 이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다.
- ⑧ 부착물 선전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각 선전물의 규정 및 원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준다.
- ⑨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면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모든 부착물을 직접 수거한다.
- ⑩ 제2항, 제4항과 제9항을 어겼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⑪ 부착선전물을 통신공간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의2 (출사표)

- ① 출사표는 출마한 선본의 출마의 변, 후보자 약력, 사진 등으로 구성된 선본의 출마를 알리는 부착 선전물이다.
- ② 크기는 A1 3장 이내로 제한한다.
- ③ 출사표는 1종 4부로 제한한다.
- ④ 부착장소는 4곳으로 학생회관, 학술정보관 후문 앞, 신관 앞 삼거리, 제1공학관 앞 공자로 제한한다.
- ⑤ 입체제작을 허용하지 않는다.
- ⑥ 사용된 재료는 제한이 없다.
- ⑦ 출사표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시정조치를 준다.

제4조의3 (자보)

- ① 자보는 각 선본이 공약을 알리거나 선본의 홍보를 위하여 지면에 내용을 담아 게시판에 부착하는 부착 선전물이다.
- ② 자보의 종류는 대자보와 소자보로 나눈다.
- ③ 대자보는 A2 크기 이내로, 소자보는 A3 크기로 제작한다.
- ④ 각 선본 자보 제작은 대자보 400장 소자보 150장으로 제한한다.
- ⑤ 자보를 제작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재료에는 제한이 없다.
- ⑥ 자보를 제작하는데 있어 제2항의 범위, 제1조의 범위 내에서는 그 형태를 자유롭게 한다.
- ⑦ 부착장소는 학내 게시판으로, 세부사항은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한다.
- ⑧ 자보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4조의4 (왕자보)

- ① 왕자보는 자보에 담기 힘든 선본의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위한 부착 선전물이다.
- ② 왕자보는 종수 제한 없이 총 3개까지 제작할 수 있다.
- ③ 크기는 A1 3장 이내로 한다.
- ④ 부착장소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인정되는 장소로 한다.

⑤ 왕자보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4조의5 (현수막)

- ① 현수막은 선본의 로고, 후보자의 사진, 기타 문구를 넣어 도로 혹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선전물이다.
- ② 현수막은 종수와 상관없이 총 4개까지 제작할 수 있다.
- ③ 현수막 제작은 인쇄를 허용한다.
- ④ 현수막의 크기는 가로 8마(720cm) X 세로 1폭(110cm) 이내로 제한한다.
- ⑤ 부착장소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인정되는 장소로 한다.
- ⑥ 현수막이 훼손된 경우에만 교체가 1회 인정되며, 동일한 내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⑦ 현수막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4조의6 (걸개)

- ① 걸개는 선본의 로고, 후보자의 사진, 기타 문구를 넣어 게시하는 선전물로, 현수막보다 더 큰 크기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 한다.
- ② 걸개는 1종에 한하여 허용한다.
- ③ 걸개 제작은 인쇄를 허용한다.
- ④ 걸개는 가로 12마(1080cm) X 세로 5폭(550cm) 이내로 제한한다.
- ⑤ 정확한 크기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하며, 각 선본이 동일한 크기여야 한다.
- ⑥ 부착장소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하며, 중선관위에서는 이들 걸개가 형평성 있게 걸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⑦ 걸개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4조의7 (카드글씨)

- ① 카드글씨는 종이 한 면에 글자 하나씩을 써서 나열하여 선본이 알리고자 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연속적 형태의 부착 선전물이다.
- ② 카드글씨는 2종까지 제작이 가능하며, 총 2개로 제한한다.
- ③ 나타내고자 하는 한 문장이 완성되는 카드글씨들의 합을 1개로 한다.
- ④ 카드글씨는 카드 한 장의 크기를 B4이하로 제한한다.
- ⑤ 카드글씨 1개에 담을 수 있는 문장의 길이는 띄어쓰기를 불포함하여 20자 내로 규정한다.
- ⑥ 부착장소는 자보 게시장소와 동일하다.
- ⑦ 카드글씨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 명령을 준다.

제5조 (피켓)

- ① 피켓은 특정 문구나 내용을 담아 선전전이나 기타 유세 시에 휴대하여 활용하는 선전물이다.
- ② 피켓은 종류에 상관없이 5개까지 제작 가능하다.
- ③ 크기는 A2 이하로 제한한다.
- ④ 피켓은 부착을 금지하며, 선전전과 기동선전전 등에서 휴대용으로만 사용한다.

- ⑤ 피켓 제작은 인쇄를 허용한다.
- ⑥ 피켓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6조 (입체선전물)

- ① 입체선전물은 선본의 홍보를 위하여 입체 형태로 제작한 조형물 등을 총칭한다.
- ② 크기는 가로 2M, 세로 2M, 높이 2M 이내로 제한하여 최대 2종으로 한다.
- ③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입체선전물 제작은 인쇄를 허용한다.
- ⑤ 제작재료와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.
- ⑥ 설치장소는 모든 선본이 설치를 원할 경우에만 정하도록 하고, 그 이외에는 따로 장소를 사전에 중선관위로부터 인준을 받는다.
- ⑦ 중선관위는 입체선전물의 설치장소가 부적절할 경우 즉시 조절할 수 있으며, 선본은 이를 6시간 내에 수정하여야 한다.
- ⑧ 입체선전물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7조 (선본깃발)

- ① 선본깃발은 선본의 로고 등을 담아 깃발형태로 만들어 선전전이나 기타 유세 시에 휴대하여 활용하는 선전물이다.
- ② 크기는 가로 2M, 세로 2M 이내로 제한하여 최대 2종으로 하며 최대 2개로 제한한다.
- ③ 선본깃발 제작은 인쇄를 허용한다.
- ④ 선본깃발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8조 (배포선전물)

- ① 배포선전물은 리플렛, 신문, 유인물로 한정한다.
- ② 기본적으로 배포선전물은 원칙에 명시된 도수규정에 따라 제작한다.
- ③ 도수규정의 예외경우는 각 배포선전물 세칙에 명시해 놓는다.
- ④ 정해진 매수 및 종류 외의 배포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없다.
- ⑤ 배포선전물의 경우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나 부착된 중선관위의 스티커를 재사용을 하는 행위는 금한다.
- ⑥ 정해진 부수 외 남은 분량의 배포선전물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⑦ 모든 배포선전물은 배포 전 정해진 인준시간에 중선관위의 인준을 받고 배포해야 한다.
- ⑧ 모든 배포선전물은 기본적으로 인쇄를 허용한다.
- ⑨ 배포선전물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각 배포선전물의 규정 및 원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준다.
- ⑩ 단, 제2항, 제6항을 어겼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⑪ 단, 제4항, 제5항, 제7항을 어겼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⑫ 배포선전물을 통신공간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의2 (리플렛)

- ① 리플렛은 후보자약력, 전하는 말, 공약 등을 담아 배포하는 배포선전물이다.

- ② 4종, 6000매 이내에서 제작한다.
- ③ 크기는 B4이내에서 자유롭게 한다.
- ④ 형태 가공이 가능하며, 입체형태도 제작이 가능하다.
- ⑤ 리플렛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8조의3 (신문)

- ① 신문은 신문의 형태로 선본의 방향이나 공약 등을 홍보하는 배포선전물이다.
- ② 1종, 2500부 이내로 제한한다.
- ③ 크기는 일반 신문크기로 하고 4페이지로 제한한다.
- ④ 컬러제작을 허용하지 않는다.
- ⑤ 일반 신문용지로만 제작하여야 한다.
- ⑥ 신문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8조의4 (유인물)

- ① 유인물은 선본이 전하고 싶은 말이나 투표독려, 기타 홍보문구를 담아 배포하는 배포선전물이다.
- ② 종수 제한 없이 2000매 내에서 제작한다.
- ③ 크기는 B4이내에서 단면 1장으로 제한한다.
- ④ 형태가공이 가능하다.
- ⑤ 컬러제작을 허용하지 않는다.
- ⑥ 설문지도 유인물에 포함한다.
- ⑦ 유인물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
제8조의5 (중선관위선전물)

- ① 중선관위선전물은 중선관위에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 및 부착하는 선전물이다.
- ② 중선관위선전물은 포스터, 자료집, 유인물로 한정한다.
- ③ 중선관위선전물은 특별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선전세칙의 기본 도수 규정을 따른다.
- ④ 중선관위선전물은 각 선본의 인력제공을 받아 중선관위 책임 하에 배포 및 부착한다.
- ⑤ 모든 중선관위선전물은 기본적으로 인쇄를 허용한다.
- ⑥ 기본적으로 선본이 직접 제작하여 제출하는 선전물의 경우 도수 규정을 따라 제작한다.
- ⑦ 중선관위선전물은 학생회비와 선거공영자금으로 만드는 선전물인 만큼, 과도한 양을 만들어 남기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⑧ 중선관위선전물에는 중선관위가 발행했음을 의미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.
- ⑨ 중선관위선전물은 중선관위의 통신공간에 게시할 수 있다.

제8조의6 (자료집)

- ① 자료집은 각 선본의 공약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제작하는 선전물로, 내용을 공정하게 담아야 한다.
- ② 규격은 B5크기로 한 선본 당 30페이지 이하로 제한한다.
- ③ 중선관위 또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정해진 시간 이전에 파일을 중선관위에 제출 하여

야 한다. 그 기한은 후보자 등록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으로 지정한다.

- ④ 규정된 시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징계는 각호와 같다.
 - 1. 규정된 시간 30분 이내 제출 시 시정조치
 - 2. 규정된 시간 30분 초과 1시간 이내 제출 시 주의
 - 3. 규정된 시간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제출 시 경고
 - 4. 규정된 시간 2시간 이후 제출 시 자료집 미제작
- ⑤ 단, 규정된 시간 이후에 제출한 상태에서 자료집 제작을 포기하는 경우,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는다.
- ⑥ 제출은 즉시 인쇄가 가능하게 편집이 완료된 PDF 파일 상태로 하여야한다.
- ⑦ 부수는 3000부 이내로 하며, 한 책에 모든 선본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다. 선본이 2개 일 때는 앞뒤로 인쇄를 하며, 3개 이상일 때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자료집 기재 순서를 결정한다.
- ⑧ 컬러제작을 허용하지 않는다.
- ⑨ 제출된 파일에 대해서 중선관위는 제출시간 이후 2시간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시 통보시간 이후 2시간 이전까지 각 선본은 정정하여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, 중선관위가 검토하는 문제점은 선본 간 과도한 비방, 허위사실 유포, 기타 규정 위반 여부로, 오탈자 및 해상도, 확대/축소 관련 문제 등은 중선관위에서 검토할 의무가 없다.

제8조의7 (포스터)

포스터는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, 간단한 공약 정보 등을 담아 부착하는 선전물이다.

- ① 규격은 한 선본 당 B3크기로 형태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.
- ② 중선관위 또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정해진 시간 이전에 파일을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출은 즉시 인쇄가 가능하게 편집이 완료된 PSD파일, JPG파일, AI파일 또는 PDF 파일 중 하나로 하여야한다.
- ④ 부수는 각 선본 당 200부 이내로 한다.
- ⑤ 각 선본의 포스터를 옆으로 나열하여 하나로 붙여서 인쇄할 수 있다.
- ⑥ 포스터의 제작은 도수규정을 따른다.

제8조의8 (유인물)

- ① 종수 제한 없이 2000매 내에서 제작한다.
- ② 크기는 B4이내에서 인쇄물 1장으로 제한한다.
- ③ 흑백 인쇄만을 허용한다.

제8조의9 (중선관위선전물의 예외)

- ① 대자보의 경우, 그 효용을 따져보았을 때 선거 일정 알림, 이의제기사항 공고 등 ‘선전물’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, 중선관위선전물의 예외로 한다.
- ② 제8의 6조 및 제8의 7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이더라도 내용이 선본을 선전하는 것이 아닌, 중선관위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중선관위선전물의 예외로 한다.

제9조 (유세)

- ① 유세는 학우들에게 선본의 입장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.
- ② 근거 없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루머를 유포할 경우 중선관위의 판단 하에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
제9조의2 (문화선전전)

- ① 각 선본에서 문화선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원칙적으로 평일만 포함한다.
 - 1. 11:45-12:30중 30분
 - 2. 17:45-18:30중 30분
- ② 각 선본에서 문화선전전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학생회관, 후문이다.
- ③ 정해진 장소 외의 문화선전전을 금한다.
- ④ 정기시간 문화선전전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된 일정은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확정한다.
- ⑤ 피켓, 선본깃발 등 휴대가 가능한 선전물 및 기타 소품을 문화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⑥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주의를 준다.
- ⑦ 유세 중에는 규정된 배포 선전물을 제외한 어떤 물품도 배포할 수 없다.
-
- ⑧ 유세 중에는 선본복을 제외한, 통일성이 의심되는 복장을 입고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을 금한다.
- ⑨ 문화선전전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9조의3 (기동선전전)

- ①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, 기동하면서 선본을 선전하는 유세를 뜻한다.
- ② 교내는 ‘북문~지관 길’, ‘지관’, ‘쪽문 입구 보도블럭(인도)’, ‘삼성서울병원(성균관대학교 육병원) 일대’ 를 포함하며, 교내 안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하다.
- ③ 강의실 유세 및 삼성서울병원 일대를 제외하고는 실내 유세를 금한다.
- ④ 한 장소에 10명 이하로 진행한다.
- ⑤ 유세 중에는 규정된 배포선전물을 제외한 어떤 물품도 배포할 수 없다.
- ⑥ 시간은 08:30 - 19:00까지 가능하다.
- ⑦ 카드글씨, 피켓, 선본깃발 등 휴대가 가능한 선전물 및 기타 소품을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⑧ 유세 중에는 선본복을 제외한, 통일성이 의심되는 복장을 입고 기동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을 금한다.
- ⑨ 기동선전전에 관한 세칙을 위반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9조의4 (강의실유세)

- ①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을 강의실 안에서 학우들에게 선전하는 유세를 의미한다.

- ② 단, 후보자가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원이 타 후보의 비방이나 유세방해를 했을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③ 지지유세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강의실유세로서 표현하는 것이다.
- ④ 지지유세는 선본원에 한하여 가능하다.
- ⑤ 피켓, 선본복, 기타 소품은 활용가능하며, 선본깃발은 사용할 수 없다.
- ⑥ 지지유세 시,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루머를 할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⑦ 강의실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유세는 경고를 준다.

제9조의5 (합동유세)

합동유세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2장 통신세칙

제10조 (원칙)

- ① 학우들의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여 통신공간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통신공간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반 사항은 중선관위에서 정한다.
- ② 자유롭고 책임 있는 통신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만든다.
- ③ 중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통신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루머나 비난이 남용되는 것을 제지한다.
- ④ 중선관위에서는 통신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실명사용을 바탕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⑤ 추천인 서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모든 통신상의 선거운동은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중지되어야 한다. 이를 어길 경우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
제11조 (중선관위 온라인 계정의 세부 운영)

- ① 중선관위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며, 이에 대한 세부 운영 방침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.
- ② 학우들로부터의 제보는 중선관위 메시지로만 받으며, 실명을 공개한 경우에만 접수한다. 중선관위는 선본원이 아닌 학우들로부터 질문을 접수한 후 해당 선본의 답변을 받아 중선관위 페이지에 게시한다.
- ③ 학우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, 답변을 게시할 때 실명을 가린 채로 질문과 답변을 함께 게시해야한다. 단, 질문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고, 개인메세지로 전달한다.
- ④ 중선관위와 선본 간의 협의를 통해 중선관위가 결정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중선관위 페이지를 선본 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2조 (온라인 유세)

- ① 온라인 유세는 중선관위를 통해 허가를 받은 통신공간에서만 가능하다.
- ② 모든 게시글은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, 허가받지 않은 게시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게 주의 이상의 징계를 준다.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는 온라인 유세를 했을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③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허가를 받은 통신 공간의 게시글을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, 본인이 선본원임을 밝혀야 한다. 본인이 선본원임에도 선본원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,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④ 허가를 받은 통신 공간에서의 댓글 등록은 선본원이 아닌 자도 가능하며, 선본원인 자가 댓글을 달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선본원임을 밝혀야 한다. 이를 어길 시, 주의를 준다.

제3장 재정세칙

제13조 (재정세칙)

- ① 총학생회 선거는 최대한 돈을 적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총학생회 선거의 재정은 500만원으로 제한하며, 식비를 제외한 선거 제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,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50만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시정조치
 2.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주의
 3. 1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경고
- ④ 중선관위는 각 선본에 선거공영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액수는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한다.
- ⑥ 선거공영자금은 중선관위선전물 제작에만 사용해야한다.
- ⑦ 중선관위는 개표 전까지 선거공영자금의 잔액을 각 선본에게 반환해야 한다.
- ⑧ 총학생회 선거의 재정은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⑨ 각 선본은 선거 시 사용한 비용은 투표 첫날 09:00까지 중선관위에 정산하여 대자보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. 기한을 어길 경우,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⑩ 영수증의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,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⑪ 중선관위는 각 선본의 인력제공을 받아 제출된 대자보 형태의 정산내역을 당일 12:00 까지 중앙대자보판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⑫ 중선관위는 선거 마지막 날 12:00까지 선거제반비용으로 사용한 재정내역(선거공영자금포함)을 중앙대자보판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장 사례세칙

제14조 (원칙)

- ① 매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중선관위의 각기 다른 판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, 학생사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.
- ②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발생하는 상황을 정리하여 하나의 세칙으로 만드는 것은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은 틀림없다.
- ③ 사례세칙은 기존의 총학생회 선거에서 발생했던 각종 상황에 대한 징계를 정확히 명시한 것으로서 1장~3장의 선거운동규칙을 근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사례세칙은 매년 다른 중선관위의 다른 판단에 의한 선본의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차후 총학생회 선거에 있어 사례세칙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, 기존의 사례에 대한 세칙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 (신체부착물에 관한 사례세칙)

- ①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결정된 장소와 교내를 제외한 장소에서 선본복을 노출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② 중선관위에서 인준한 선본복의 형태를 변형시켰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16조 (부착물에 관한 사례세칙)

- ① 부착물을 선거운동규칙 협의모임에서 결정된 위치와 다르게 부착했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- ② 상대 선본의 대자보를 가려서 부착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③ 중선관위에서 인정한 인준용 스티커(또는 기타 입증도구) 외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위조할 시, 또는 이미 사용한 것을 재사용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④ 사용 후 남은 스티커를 중선관위에 반납하지 않을 시 중선관위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⑤ 중선관위의 인준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부착물을 이의신청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⑥ 허가되지 않은 곳에 중선관위 스티커를 사용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⑦ 부착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(훼손한) 선본에 경고를 준다.

제17조 (유인물에 관한 사례세칙)

- 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유인물이 발견되거나 제보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 명령을 준다.
- ② 중선관위에서 인정한 인준용 스티커(또는 기타 입증도구) 외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위조할 시, 또는 이미 사용한 것을 재사용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③ 사용 후 남은 스티커를 중선관위에 반납하지 않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
- ④ 중선관위의 인준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유인물을 이의신청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⑤ 허가되지 않은 곳에 중선관위 스티커를 사용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시정조치를 준다.
- ⑥ 유인물을 고의적으로 훼손(폐기)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(훼손한/폐기한) 선본에 경고를 준다.

제18조 (유세에 관한 사례세칙)

- ① 상대 선본이 유세할 시 고의적으로 유세를 방해하거나, 유인물, 부착물 등으로 홍보할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
제19조 (중복징계에 관한 사례세칙)

- ① 동시에 제출한 서류 중 다수의 학생증 사진이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, 이를 한 개의 규칙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1회를 준다.
- ② 강의실유세 기간 동안 다수의 선본원이 동시에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유세를 방해하는 경우에는, 이를 한 개의 규칙위반 행위로 보고 경고 1회를 준다.
- ③ 문화선전전에 관한 세칙 위반으로 주의 1회를 받은 경우에는, 근접한 장소 또는 시간 내에 같은 이유로 다시 주의 받지 아니한다.
- ④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전물을 부착, 배포, 사용하여 경고 1회를 받은 경우에는, 근접한 장소 또는 시간 내에 같은 이유로 다시 경고 받지 아니한다.
- ⑤ 근접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해석 권한은 중선관위에게 있다.

제20조 (기타 사례세칙)

- ① 중선관위가 허가한 선본원(선본장 및 후보자 포함) 외의 선본원이 중선관위실에 입실하였을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②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약력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준다.
- ③ 선거운동과정이 지나치게 치열하여, 선거의 민주성을 해치고 선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준다.
- ④ 교내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서명을 받는 경우,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해석하여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될 시 주의 1회를 준다.

부칙

제1조 (선거 지침의 제정)

중선관위는 본 세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거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조 (선거운동규칙의 효력발생)

본 선거운동규칙은 후보자 등록 시작일까지 공고하며, 최종등록회의가 완료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.

제3조 (상식)

이외의 것은 중선관위의 결정 그리고 상식적인 범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.

제4조 (독립성)

선거운동규칙은 양 캠퍼스 별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적용, 시행된다.

제5조 (선거운동본부의 자세)

선거운동본부는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재에 따를 의무를 지닌다.